의안 번호	444

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4. 16.

전문위원 강 영 숙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444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4. 4.

라. 회부일자 : 2025. 4. 10.

2. 제안이유

○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인 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의 위탁기간이 2025.12.31.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의2(승인 및 동의)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대상 현황

시설명	소재지	규모(㎡)		개관일
정릉실버 복지센터	솔샘로 8 (정릉동)	813㎡	지1층~3층	2010.2.1.
삼선실버 복지센터	삼선교로18길 41 (삼선동)	542㎡	1~4층	2019.6.21.
성북50+센터	지봉로24길 26 (보문동)	1,072㎡	3,4층	2019.2.12.

※ 정릉실버복지센터 : 병설 운영 중인 정릉데이케어센터 위탁 포함

나. 위탁기간 : 2026. 1. 1. ~ 2030.12.31. (5년)

다. 위탁방법 :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성북구 민간위탁,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

라. 위탁사무의 범위 : 센터 관리·운영 및 사무 전반

시설명	위탁사무
정릉실버 복지센터	-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(상담, 사회교육, 기능회복사업 등) 지원 - 지역사회활동(지역기관 참여, 지역복지사업 등) 발굴 및 연계 - 외부사업 공모·참여 및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제공 - 시설물 관리 사항(건물, 물품 장비 등) -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
삼선실버 복지센터	
성북 50+센터	- 중장년층의 제2인생 재설계 교육 등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 - 기타 중장년층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

※ 정릉실버복지센터 : 병설 운영 중인 정릉데이케어센터 위탁사무 포함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

5. 검토의견

□ 동의안 개요

○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의 운영사무를 재위탁(공개모집) 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‘성북구 민간위탁 조례’) 제4조제3항[1]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〈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〉

시설명	소재지	규모(㎡)	종사자수 (月이용인원)	위탁법인 위탁기간	‘25년 사업비 (천원)
정릉실버복지센터	솔샘로 8(정릉동)	813 (지1층/3층)	13명 (1,971명)	사회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 ‘21.1.1.~’25.12.31.	381,078
삼선실버복지센터	삼선교로18길 41(삼선동)	542㎡ (1~4층)	4명 (2,786명)	사단법인 다원문화 ‘21.1.1.~’25.12.31.	348,062
성북50+ 센터	지봉로24길 26(보문동)	1,072㎡ (3, 4층)	8명 (694명)	사회복지법인 위드-캔 복지재단 ‘21.1.1.~’25.12.31.	710,000

※ 정릉실버복지센터 : 병설 운영 중인 정릉데이케어센터 포함

□ 주요내용

○ 재위탁 대상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는 위탁기간이 2025.12.31자로 만료되기에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[2]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이며,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---

1) **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**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2) **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** ⑤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(개정 2019. 1.15).

□ 민간위탁의 적정성

○ 정릉실버복지센터(정릉데이케어센터 포함) 외 2개소는「노인복지법」제31조[3]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, 시설의 운영 사무는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[4]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[5] 및 제21조의2[6]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5년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함

□ 종합의견

○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정릉실버복지센터(정릉데이케어센터 포함) 외 2개소 시설에 대한 관리·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「성북구 민간위탁 조례」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---

3)「노인복지법」제31조(노인복지시설의 종류)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노인주거복지시설 2. 노인의료복지시설 **3. 노인여가복지시설 4. 재가노인복지시설** 5. 노인보호전문기관 6.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.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

4)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**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**하게 할 수 있다.

5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**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**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, 2020. 1. 3.>
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**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**

6)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**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**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